

효성중공업 인권경영 선언문

효성중공업은 ‘인간존중에 기반해 세계를 무대로 경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 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 국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범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하며,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Scope

본 선언문은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 내에 속한 모든 국내외 임직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협력업체,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고객사, 지역사회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회사는 협력사를 비롯한 Value Chain 전반에 걸쳐 본 선언문의 준수를 적극 권장합니다.

2. Governance

효성중공업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대표이사 직속의 ESG경영추진위원회는 전담부서에서 식별한 인권경영 주요 이슈 및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아울러, 인권경영을 포함한 ESG경영활동에 대한 KPI 성과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내·외 인권 리스크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 Human Rights Risk Management System

효성중공업은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인권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전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당사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된 인권 이슈 및 잠재적 리스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해관계자별 리스크를 분석하여 완화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General Principles

효성중공업은 UNGC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7대 인권경영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1) 차별 금지 및 인도적 대우

- 회사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회사는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압이나 폭언 등의 행위,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일절 금지하며, 매년 직장 내 성희롱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힘쓴다.

2) 개인정보 보호

-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며, 임직원의 동의하에 수집한다.
-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며,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3) 근로조건 준수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정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으며, 불가치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회사는 임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임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회사는 임직원 대상 차별 및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실시와 안내를 통해 차별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인간 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결사의 자유

- 회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며,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보장한다.
- 회사는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6) 산업안전 보장

- 회사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영 정책을 결정한다.
- 회사는 모든 작업자가 당사의 '환경경영방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예방조치 · 안전수칙에 따른 작업 수행, 개인 보호장비 제공, 정기적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7)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을 준수하며,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고,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여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법령에서 예외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취업과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임직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을 보장한다.

효성중공업은 인권경영을 사업 경영의 중요 원칙으로 삼고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우선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월

효성중공업(주) 대표이사 우태희

